



나를 찾아가는 학교
미래를 만드는 학교

가 정 통 신 문

경희대학교 병설 자율형사립고
경 희 고 등 학 교

제 목 :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결과 안내

학부모님께!

항상 학교의 발전과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에 관심을 갖으시고 학교 교육발전에 적극 동참하여 주신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1차 (2021-제1회) 경희고등학교운영위원회 정기회에서 심의·자문된 안건 처리 결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관심과 참여를 통하여 단위학교의 교육자치기구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회의 일시 : 2021. 4. 7.(수) 16:00
2. 장 소 : 우리학교 세미나실(본관 3층)
3. 처리 안건 : 학교운영위원회 청렴(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등 금지)교육 외 15건
(세부 내용은 붙임 참조)

붙임 :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심의·자문 처리 결과 안내 1부. 끝.

2021년 4월 일

경 희 고 등 학 교 장



나를 찾아가는 학교
미래를 만드는 학교

가 정 통 신 문

경희대학교 병설 자율형사립고
경희고등학교

제21회 경희고등학교운영위원회 정기회 안건 심의·자문 처리 결과 안내

1. 회의 일시 : 2021.4.7. (수) 16:00
2. 장 소 : 우리학교 세미나실(본관 3층)
3. 참석 인원 : 11
4. 안건 심의·자문 결과

번호	안 건 명	심의 결과	내 용	비고
1	학교운영위원회 청 렴(부정청탁 및 금 품수수등 금지)교육	원안 가결	<p style="text-align: center;">2021학년도 청렴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운위위원 불법찬조금 근절 연수</p> <p>I 개요</p> <p>■ 추진배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탁금지법 시행 및 학부모와 교원의 꾸준한 노력으로 불법찬조금 조성 행위가 많이 사라졌지만 아직도 일부 학교에서는 불법찬조금 조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함 ○ 특히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청탁금지법 안정적 정착과 청렴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불법찬조금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서울교육가족 모두의 지속적인 실천이 필요한 때임 ○ 따라서 신학기에 즈음하여 발생될 수 있는 각급 학교 일부 학부모단체 등의 관행적인 불법찬조금 모금의 근원적 차단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안내하고자 함 <p>II 세부 추진 계획</p> <p>1 다양한 홍보 및 캠페인을 통한 인식변화 유도</p> <p>■ 모바일 홍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 및 학부모에게 불법찬조금 근절 협조 SMS 문자 전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 학기 담임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불안감과 막연한 기대심리를 조기에 불식시켜 학부모와 학교(교사)간의 신뢰성 제고 	

페이지	안건명	심의결과	내용	비고
1	학교운영위원회 청원가결 령(부정청탁 및 금수수등 금지)교육	원안가결	<p>■ 학교 홈페이지 홍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기 : 연중(3월~5월 집중 홍보) ○ 방법 : 학교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팝업창 탑재 ○ 내용 : 학교 자체 「불법찬조금 근절 대책」, 불법찬조금 신고센터·공익제보센터·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안내 등 <p>■ 가정통신문 발송 및 각종 홍보물 게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찬조금 근절에 대한 학교장의 강한 의지 표명 및 참여 독려 ○ 교문·중앙현관 앞 등에 불법찬조금 근절 관련 홍보물 설치 (학기 초 집중 게시) <p>■ 불법찬조금 근절 캠페인 전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자체 「불법찬조금 근절」 관련 캠페인 전개 <p>2 학교 관리자의 역할</p> <p>■ 학교장의 적극적인 근절 노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장의 강력한 리더십과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모든 학교가 ‘불법찬조금 없는 학교’ 천명 ○ 각종 회의 시 학교장의 분명한 불법찬조금 근절 의지 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별(학부모, 교직원) 다양하고 진정성 있는 연수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찬조금 모금어 막기 조약 대부분 발생함에 따라 3-5월 중 집중 실시 ○ 학부모단체 등에 대한 지도·점검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단체 등의 건전한 운영 및 학부모의 의식 변화 유도 - 불법찬조금 모금 인지 시 전액 반환·시정 조치 - 학부모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경비의 학교예산 지원 <p>■ 불법찬조금 근절 담당관 지정·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관 : 교감(행동강령책임관) ○ 계획 수립 및 자체점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찬조금 근절 자체 세부계획」 수립·시행(보고 생략) - 계획 수립 시 불법찬조금 근절 담당관 지정(행동강령책임관) - 점검시기 : 학기 초(4월, 9월), 스승의 날 전후, 체육대회, 수학여행, 명절 등 - 점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찬조금 근절 교직원 및 학부모 교육·홍보 여부 · 학교발전기금 조성에 관한 지침 준수 여부 · 학부모 단체 등 회비 모금 동향 정보수집 및 점검·관리 등 <p>* 점검 결과는 <붙임 2> 자체 점검 목록에 의하여 기록보존(공적기록 점검 시 확인 예정)</p> <p>3 교육부조리 신고 및 보상제도 활성화</p> <p>■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en.go.kr)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불법찬조금신고 * 지방교육청정보포털(http://edinfo.go.kr) > 교육정책 >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 서울특별시교육청 #827기 ○ 공익제보센터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en.go.kr)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공익제보센터 - 신고내용: 부패행위, 공익침해, 부정청탁, 행동강령 위반 - 신고방법: 이메일 cleanedu@sen.go.kr / ☎ 1588-0260 ○ 처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보 민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결과 회신 - 신고자 신분보장 및 비밀 철저히 준수(불이익 금지) 	

제 목	안 건 명	심 의 결 과	내 용	비 고
-----	-------	---------	-----	-----

2	학교 규정 개정	원안 가결	2021학년도 학교규정 개정 신규대비표	
---	----------	-------	------------------------------	--

부서	규정	조항	변경 전	변경 후																
학생부	학칙	제31조	학교폭력대책 지치위원회(삭제)	<p>제31조(학교폭력 전담기구)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둔다.</p> <p>② 전담기구 구성원: 교감, 학생부장,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교사), 학부모로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구성한다(법률 제14조 제3항). 학부모는 구성원의 1/3 이상이어야 한다.</p> <table border="1" data-bbox="1037 851 1324 1030"> <tr> <td>전담기구 인원</td> <td>5</td> <td>6</td> <td>7</td> <td>8</td> <td>9</td> <td>10</td> <td>11</td> </tr> <tr> <td>학부모 수</td> <td>2명 이상</td> <td>2명 이상</td> <td>3명 이상</td> <td>3명 이상</td> <td>3명 이상</td> <td>4명 이상</td> <td>4명 이상</td> </tr> </table> <p>1. 전담기구를 구성하는 학부모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학교장이 위촉한다.</p> <p>2. 전담기구 심의방법, 전담기구 업무분장, 학부모위원 임기 등 전담기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p> <p>③ 학교폭력 전담기구 역할</p> <p>1. 사안접수 및 보호자통보: 접수한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관련학생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통보일자, 통보방법 등 통보사실을 기록한다.</p> <p>2. 교육(지원)청 보고: 인지 후 48시간 이내 교육청(교육지원청)으로 사안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3. 학교폭력 사안조사: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피해 사실 및 가해사실 여부에 대해 조사하여야 한다.</p> <p>4. 사안조사 결과보고: 신고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5.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 학교장 자체해결의 객관적 요건 충족 여부 및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p> <p>6. 졸업 전 피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심의: 심의대상자 조건을 만족할 경우 심의등통해 졸업과 동시에 삭제한다.</p> <p>7. 집중보호 또는 권관대상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관련 학생 담임교사와 함께 지속적인 상담 및 기록을 진행한다.</p>	전담기구 인원	5	6	7	8	9	10	11	학부모 수	2명 이상	2명 이상	3명 이상	3명 이상	3명 이상	4명 이상	4명 이상
전담기구 인원	5	6	7	8	9	10	11													
학부모 수	2명 이상	2명 이상	3명 이상	3명 이상	3명 이상	4명 이상	4명 이상													

구분	안건명	심의결과	내용					비고																																									
2	학교 규정 개정	원안가결	<table border="1"> <thead> <tr> <th>부서</th> <th>규정</th> <th>조항</th> <th>변경 전</th> <th>변경 후</th> </tr> </thead> <tbody> <tr> <td>학생부</td> <td>휴대전자기기 관리 규정</td> <td>제3조</td> <td> <p>② 방과후학교 활동과 관련된 시간에는 소지는 가능하지만 교사 내에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p> <p>③ 아침 조례 시 휴대전화기를 수거한 학급에서는 당일 종례 시 휴대전화기를 직접 학생들에게 돌려준다.</p> </td> <td> <p>삭제 (근거) ⑤ 방과 후 교육활동 시에는 휴대전화기를 수거하지 않고 방과 후 담당교사의 재량에 맡긴다.</p> <p>⑥ 조례 시 휴대전화기를 수거한 학급에서는 당일 종례 시 휴대전화기를 직접 학생들에게 돌려준다.</p> </td> </tr> <tr> <td></td> <td></td> <td>제5조</td> <td>학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공중전화기 등을 설치한다.</td> <td>긴급 상황으로 학부모 등과 통화가 필요할 시에는 학교 전화로 연락할 수 있도록 한다.</td> </tr> <tr> <td>학생부</td> <td>학생자치회 규정</td> <td>제34조</td> <td>학급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회장 1인, 부회장 1인, 대의원 1인, 학생회에 준하여 부장 6인(총무부, 경제부, 홍보부, 체육부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td> <td>학급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회장 1인, 부회장 1인, 대의원 1인을 두고 학급 운영에 따라 부장을 둘 수 있다.</td> </tr> <tr> <td>학생부</td> <td>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규정</td> <td></td> <td></td> <td>삭제</td> </tr> <tr> <td>학생부</td> <td>학교폭력 전담기구 규정</td> <td></td> <td></td> <td>신설(결부과일 참조)</td> </tr> <tr> <td>학생부</td> <td>제일없는 평과로운 학교만들기 규정</td> <td>전체</td> <td>성찰교실 담당자</td> <td>전문성담당교사</td> </tr> <tr> <td>학생부</td> <td>교권보호위원회 규정</td> <td>제3조</td> <td> <p>② 1.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우리 학교의 교원</p> <p>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p> <p>3. 우리 학교 학생의 학부모</p> <p>4.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p> <p>5. 우리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찰서에 소속된 국가경찰공무원</p> <p>6.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p> </td> <td> <p>② 1.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우리 학교의 교원: 교감, 학생부장</p> <p>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p> <p>3. 우리 학교 학생의 학부모: 학부모회 회장</p> <p>4.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p> <p>5. 우리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찰서에 소속된 국가경찰공무원: 학교담당 스톨 폴리스</p> <p>6.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p> </td> </tr> <tr> <td>연구부</td> <td>방과후학교 소위원회 규정</td> <td>제11조</td> <td>주간, 야간</td> <td>주간(18:00), 야간(18:00~)</td> </tr> </tbody> </table>	부서	규정	조항	변경 전	변경 후	학생부	휴대전자기기 관리 규정	제3조	<p>② 방과후학교 활동과 관련된 시간에는 소지는 가능하지만 교사 내에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p> <p>③ 아침 조례 시 휴대전화기를 수거한 학급에서는 당일 종례 시 휴대전화기를 직접 학생들에게 돌려준다.</p>	<p>삭제 (근거) ⑤ 방과 후 교육활동 시에는 휴대전화기를 수거하지 않고 방과 후 담당교사의 재량에 맡긴다.</p> <p>⑥ 조례 시 휴대전화기를 수거한 학급에서는 당일 종례 시 휴대전화기를 직접 학생들에게 돌려준다.</p>			제5조	학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공중전화기 등을 설치한다.	긴급 상황으로 학부모 등과 통화가 필요할 시에는 학교 전화로 연락할 수 있도록 한다.	학생부	학생자치회 규정	제34조	학급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회장 1인, 부회장 1인, 대의원 1인, 학생회에 준하여 부장 6인(총무부, 경제부, 홍보부, 체육부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학급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회장 1인, 부회장 1인, 대의원 1인을 두고 학급 운영에 따라 부장을 둘 수 있다.	학생부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규정			삭제	학생부	학교폭력 전담기구 규정			신설(결부과일 참조)	학생부	제일없는 평과로운 학교만들기 규정	전체	성찰교실 담당자	전문성담당교사	학생부	교권보호위원회 규정	제3조	<p>② 1.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우리 학교의 교원</p> <p>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p> <p>3. 우리 학교 학생의 학부모</p> <p>4.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p> <p>5. 우리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찰서에 소속된 국가경찰공무원</p> <p>6.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p>	<p>② 1.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우리 학교의 교원: 교감, 학생부장</p> <p>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p> <p>3. 우리 학교 학생의 학부모: 학부모회 회장</p> <p>4.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p> <p>5. 우리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찰서에 소속된 국가경찰공무원: 학교담당 스톨 폴리스</p> <p>6.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p>	연구부	방과후학교 소위원회 규정	제11조	주간, 야간	주간(18:00), 야간(18:00~)	
			부서	규정	조항	변경 전	변경 후																																										
학생부	휴대전자기기 관리 규정	제3조	<p>② 방과후학교 활동과 관련된 시간에는 소지는 가능하지만 교사 내에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p> <p>③ 아침 조례 시 휴대전화기를 수거한 학급에서는 당일 종례 시 휴대전화기를 직접 학생들에게 돌려준다.</p>	<p>삭제 (근거) ⑤ 방과 후 교육활동 시에는 휴대전화기를 수거하지 않고 방과 후 담당교사의 재량에 맡긴다.</p> <p>⑥ 조례 시 휴대전화기를 수거한 학급에서는 당일 종례 시 휴대전화기를 직접 학생들에게 돌려준다.</p>																																													
		제5조	학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공중전화기 등을 설치한다.	긴급 상황으로 학부모 등과 통화가 필요할 시에는 학교 전화로 연락할 수 있도록 한다.																																													
학생부	학생자치회 규정	제34조	학급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회장 1인, 부회장 1인, 대의원 1인, 학생회에 준하여 부장 6인(총무부, 경제부, 홍보부, 체육부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학급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회장 1인, 부회장 1인, 대의원 1인을 두고 학급 운영에 따라 부장을 둘 수 있다.																																													
학생부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규정			삭제																																													
학생부	학교폭력 전담기구 규정			신설(결부과일 참조)																																													
학생부	제일없는 평과로운 학교만들기 규정	전체	성찰교실 담당자	전문성담당교사																																													
학생부	교권보호위원회 규정	제3조	<p>② 1.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우리 학교의 교원</p> <p>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p> <p>3. 우리 학교 학생의 학부모</p> <p>4.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p> <p>5. 우리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찰서에 소속된 국가경찰공무원</p> <p>6.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p>	<p>② 1.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우리 학교의 교원: 교감, 학생부장</p> <p>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p> <p>3. 우리 학교 학생의 학부모: 학부모회 회장</p> <p>4.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p> <p>5. 우리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찰서에 소속된 국가경찰공무원: 학교담당 스톨 폴리스</p> <p>6.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p>																																													
연구부	방과후학교 소위원회 규정	제11조	주간, 야간	주간(18:00), 야간(18:00~)																																													
			<table border="1"> <thead> <tr> <th>부서</th> <th>규정</th> <th>조항</th> <th>변경 전</th> <th>변경 후</th> </tr> </thead> <tbody> <tr> <td>행정실</td> <td>교육공무직원 인사관리 규정</td> <td>제59조 제60조</td> <td> <p>제59조(육아휴직) ① 학교는 생후 3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남녀직원에게 그 영아의 육아를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p> <p>② 육아휴직에 관한 사항은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규정에 의한다.</p> <p>제60조(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직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75조에 따라 유급수유시간을 부여한다.</p> </td> <td> <p>제59조(육아휴직) ① 운영부서의 장은 근무년수가 6개월 이상인 교육공무직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p> <p>②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2회 분할(새 차례로 나누어) 사용될 수 있다.</p> <p>③ 휴직 기간 중 최초 1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등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p> <p>④ 휴직종료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초의 휴직종료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p> <p>⑤ 육아휴직 사용 기간이 1년을 초과(분할 사용 시 합산 기간)하고 해당 자녀가 만 9세 이상이면서 초등학교 3학년에 진학하는 경우 휴직의 사유가 소멸한 것으로 본다.</p> <p>⑥ 기타 육아휴직과 관련한 내용은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p> <p>제60조(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p> </td> </tr> <tr> <td>체육부</td> <td>학생선수 보호소위원회 규정</td> <td>제5조</td> <td>③ 위원회는 교감, 교무기획부장, 학생부장, 체육부장, 축구부장, 교사, 학부모2명으로 한다.</td> <td>③ 위원회는 교감, 교무기획부장, 학생부장, 체육부장, 운동부 담당교사, 학부모2명으로 한다.</td> </tr> </tbody> </table>	부서	규정	조항	변경 전	변경 후	행정실	교육공무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59조 제60조	<p>제59조(육아휴직) ① 학교는 생후 3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남녀직원에게 그 영아의 육아를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p> <p>② 육아휴직에 관한 사항은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규정에 의한다.</p> <p>제60조(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직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75조에 따라 유급수유시간을 부여한다.</p>	<p>제59조(육아휴직) ① 운영부서의 장은 근무년수가 6개월 이상인 교육공무직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p> <p>②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2회 분할(새 차례로 나누어) 사용될 수 있다.</p> <p>③ 휴직 기간 중 최초 1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등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p> <p>④ 휴직종료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초의 휴직종료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p> <p>⑤ 육아휴직 사용 기간이 1년을 초과(분할 사용 시 합산 기간)하고 해당 자녀가 만 9세 이상이면서 초등학교 3학년에 진학하는 경우 휴직의 사유가 소멸한 것으로 본다.</p> <p>⑥ 기타 육아휴직과 관련한 내용은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p> <p>제60조(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p>	체육부	학생선수 보호소위원회 규정	제5조	③ 위원회는 교감, 교무기획부장, 학생부장, 체육부장, 축구부장, 교사, 학부모2명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교감, 교무기획부장, 학생부장, 체육부장, 운동부 담당교사, 학부모2명으로 한다.																															
부서	규정	조항	변경 전	변경 후																																													
행정실	교육공무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59조 제60조	<p>제59조(육아휴직) ① 학교는 생후 3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남녀직원에게 그 영아의 육아를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p> <p>② 육아휴직에 관한 사항은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규정에 의한다.</p> <p>제60조(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직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75조에 따라 유급수유시간을 부여한다.</p>	<p>제59조(육아휴직) ① 운영부서의 장은 근무년수가 6개월 이상인 교육공무직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p> <p>②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2회 분할(새 차례로 나누어) 사용될 수 있다.</p> <p>③ 휴직 기간 중 최초 1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등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p> <p>④ 휴직종료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초의 휴직종료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p> <p>⑤ 육아휴직 사용 기간이 1년을 초과(분할 사용 시 합산 기간)하고 해당 자녀가 만 9세 이상이면서 초등학교 3학년에 진학하는 경우 휴직의 사유가 소멸한 것으로 본다.</p> <p>⑥ 기타 육아휴직과 관련한 내용은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p> <p>제60조(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p>																																													
체육부	학생선수 보호소위원회 규정	제5조	③ 위원회는 교감, 교무기획부장, 학생부장, 체육부장, 축구부장, 교사, 학부모2명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교감, 교무기획부장, 학생부장, 체육부장, 운동부 담당교사, 학부모2명으로 한다.																																													

연번	안건명	심의결과	내용	비고
----	-----	------	----	----

2020학년도 학교급식 이행사항 보고

1) 개요

급식수요자의 급식에 관한 알 권리 및 원활한 급식운영을 위하여 학부모 및 학생들에게 2020학년도 급식운영계획 이행 상황을 공개하고 2021학년도 급식운영에 참고하고자 학교급식운영과 관련된 업무 이행 사항을 공개함.

2) 급식 실시 일반 현황

가) 급식실시 인원 및 실시일

급식 실시 인원				급식 실시 일				
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소계	비고	급식일수 (중)	급식일수 (고)	기간	비고
인원	502	710	1212		81	89	2020.03.01. ~2021.02.28.	

나) 급식예산 사용현황

중학교	세입	고등학교	세입	구분	세출
무상 급식비 (식재료+운영비)	67,913,380	조식	18,418,145	식재료비 (56%)	298,775,765
		무상급식비 (2+3학년)	250,162,330		
		중식 (1학년)	63,967,840		
인건비	71,669,000	고1 인건비	10,483,800	인건비 (40%)	212,395,860
처우 개선비	45,914,000	지원금 (우수식재료)	4,617,940	경비 (4%)	21,974,810
	185,496,380		347,650,055		533,146,435

다) 급식 실시 운영 현황

구분	이행 현황	내용	비고
학교급식 위생 안전관리	실시	급식실시일 매일점검	일일점검표작성 및 관리
HACCP 구성 운영	구성, 운영	급식실시일 매일점검	기록지 작성 및 관리
식중독사고대책반구성운영	계획수립 및 구성	위생사고 발생 없음	
식단 작성 계획	계획 구성	월간 식단 작성	나이스
식재료 구매 및 검수 계획	계획 및 실시	복수 검수 실시 (1주일 2번 실시함)	코로나로 인해 모니터링 구성만 하고 운영못함
학교급식 위생점검 실시	상반기, 하반기	6월(A등급) 11월(A등급) 실시	자체 점검 실시
학교급식 운영 평가 실시	년 1 회	11월(A등급) 실시	자체 점검 실시

라) 영양·위생교육 및 연수실시 현황

구분	이행 현황	내용	비고
학생대상 영양 및 급식교육	실시	가정통신문 및 홈페이지를 통한 교육 실시 급식시 현장 지도 및 급식실 계시도를 통한 교육	
영양상담실 운영	운영	급식시간을 통해서 현장에서 실시	
조리종사원 교육	실시	연 9회 정기 교육 실시 매 급식 시작 전 조회시 실시	매월
납품업체 위생교육	실시	공산, 축산, 농산, 수산은 매달 임체가 바뀌기 때문에 매달 교육자로 방문/감치와 갑곡은 분기별로 한번씩	분기별

바) 급식 관련 업무 추진 현황

구분	이행 현황	내용	비고
학교급식소위원회 구성 운영	구성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실무 검토 급식소위원회 구성만 하고 코로나로 인해 운영못함 2021년 2월3일에 회의함.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	실시	코로나로 매주 수요일 '수디날' 운영 못하고 홈페이지에 관련 자료만 제공함	
급식중식자 대체인력복제 운영	운영	예산 확보 및 대체 인력 확보	
연간 청소소독	실시	연 10회 소독 실시 (월별, 주별, 일별 청소계획 수립 후 이행)	

3 2020학년도 학교급식 이행사항 및 결산

원안가결

제 목	안 건 명	심 의 결 과	내 용	비 고
-----	-------	---------	-----	-----

4	학업성적 관리 규정 개정	원안 가결	<p style="text-align: center;">학업성적 관리 규정 신규대조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연번</th> <th style="width: 45%;">2020</th> <th style="width: 50%;">개정(안)</th> </tr> </thead> <tbody> <tr> <td>1</td> <td>제2조⑥ 외부에서 제작한 평가 도구의 활용을 지양하고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과 기능을 평가한다.</td> <td>제2조⑦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 및 각종 교내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지 않도록 유의한다.</td> </tr> <tr> <td>2</td> <td>제2조(기본방침) ② 이 지침에 의거하여 학교에서는 세부적인 학업성적관리규정을 제정하여 활용한다.</td> <td>제2조(기본방침) ③ 학교에서는 ----- 제개정하여 활용하고, 모든 교직원이 학업성적관리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교직원 연수를 학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td> </tr> <tr> <td>3</td> <td>제4조(학업성적관리위원회 구성 및 임무) ② 부위원장은 교감으로 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 위원장을 대행한다. ③ 위원은 교무부장~</td> <td>제4조(위원회의 구성·임무) ② ----- 위원 중 학교장이 정한 사람 ----- ③ 위원은 교감, 교무부장~(교감 추가)</td> </tr> <tr> <td>4</td> <td><신설></td> <td>제10조(소속 학교에서 실시한 원격 수업 수강 학생 처리) 학교의 장이 교육상 필요에 따라 소속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목) 및 창의적 체험활동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초·중등 교육법」 제24조제3항제1호의 원격수업으로 실시한 경우, 출결 처리 방법은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td> </tr> <tr> <td>5</td> <td>제19조(고사 시행 및 감독) ⑥ 감독교사는 답안지에 서명(날인)하고 매수를 확인한 후 표지에 필요한 사항(응시자, 결시자 등)을 기록·서명(날인)하여 평가업무 담당교사에게 인계하고, 평가업무 담당교사는 답안지를 과목담당교사에게 인계한다.</td> <td>제19조(지필고사 시행 관리) ⑥ ----- 정자로 서명 또는 날인 하고 ----- ----- 기록한다. 이후 답안지를 인수한 답안지 매수를 확인한 후 교과 담당교사에게 인계한다.</td> </tr> <tr> <td>6</td> <td><신설></td> <td>제28조(학교생활기록부 입력) ①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모든 교과(교)의 모든 학생에 대해 입력하며, 학생들의 교과 특성은 교사가 교과학습 평가 및 수업과정에서 수시·상시로 기록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과의 전 영역을 종합적으로 기술할 수 있도록 한다. 단, 교과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의 경우 그 사유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한다.</td> </tr> <tr> <td>7</td> <td>부칙 <신설></td> <td>부칙 제2조(본 지침에 없는 사항의 처리)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학업성적관리에 관한 사항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65호)과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라 처리한다.</td> </tr> </tbody> </table> <p>※ 서울시교육청 지침 중 관련 용어 수정이나 항목 재배치에 관한 내용은 생략하고 개정되거나 신설된 내용만 정리하였습니다.</p>	연번	2020	개정(안)	1	제2조⑥ 외부에서 제작한 평가 도구의 활용을 지양하고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과 기능을 평가한다.	제2조⑦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 및 각종 교내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2	제2조(기본방침) ② 이 지침에 의거하여 학교에서는 세부적인 학업성적관리규정을 제정하여 활용한다.	제2조(기본방침) ③ 학교에서는 ----- 제개정하여 활용하고, 모든 교직원이 학업성적관리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교직원 연수를 학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3	제4조(학업성적관리위원회 구성 및 임무) ② 부위원장은 교감으로 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 위원장을 대행한다. ③ 위원은 교무부장~	제4조(위원회의 구성·임무) ② ----- 위원 중 학교장이 정한 사람 ----- ③ 위원은 교감, 교무부장~(교감 추가)	4	<신설>	제10조(소속 학교에서 실시한 원격 수업 수강 학생 처리) 학교의 장이 교육상 필요에 따라 소속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목) 및 창의적 체험활동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초·중등 교육법」 제24조제3항제1호의 원격수업으로 실시한 경우, 출결 처리 방법은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제19조(고사 시행 및 감독) ⑥ 감독교사는 답안지에 서명(날인)하고 매수를 확인한 후 표지에 필요한 사항(응시자, 결시자 등)을 기록·서명(날인)하여 평가업무 담당교사에게 인계하고, 평가업무 담당교사는 답안지를 과목담당교사에게 인계한다.	제19조(지필고사 시행 관리) ⑥ ----- 정자로 서명 또는 날인 하고 ----- ----- 기록한다. 이후 답안지를 인수한 답안지 매수를 확인한 후 교과 담당교사에게 인계한다.	6	<신설>	제28조(학교생활기록부 입력) ①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모든 교과(교)의 모든 학생에 대해 입력하며, 학생들의 교과 특성은 교사가 교과학습 평가 및 수업과정에서 수시·상시로 기록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과의 전 영역을 종합적으로 기술할 수 있도록 한다. 단, 교과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의 경우 그 사유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한다.	7	부칙 <신설>	부칙 제2조(본 지침에 없는 사항의 처리)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학업성적관리에 관한 사항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65호)과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라 처리한다.	
			연번	2020	개정(안)																							
1	제2조⑥ 외부에서 제작한 평가 도구의 활용을 지양하고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과 기능을 평가한다.	제2조⑦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 및 각종 교내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2	제2조(기본방침) ② 이 지침에 의거하여 학교에서는 세부적인 학업성적관리규정을 제정하여 활용한다.	제2조(기본방침) ③ 학교에서는 ----- 제개정하여 활용하고, 모든 교직원이 학업성적관리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교직원 연수를 학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3	제4조(학업성적관리위원회 구성 및 임무) ② 부위원장은 교감으로 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 위원장을 대행한다. ③ 위원은 교무부장~	제4조(위원회의 구성·임무) ② ----- 위원 중 학교장이 정한 사람 ----- ③ 위원은 교감, 교무부장~(교감 추가)																										
4	<신설>	제10조(소속 학교에서 실시한 원격 수업 수강 학생 처리) 학교의 장이 교육상 필요에 따라 소속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목) 및 창의적 체험활동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초·중등 교육법」 제24조제3항제1호의 원격수업으로 실시한 경우, 출결 처리 방법은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제19조(고사 시행 및 감독) ⑥ 감독교사는 답안지에 서명(날인)하고 매수를 확인한 후 표지에 필요한 사항(응시자, 결시자 등)을 기록·서명(날인)하여 평가업무 담당교사에게 인계하고, 평가업무 담당교사는 답안지를 과목담당교사에게 인계한다.	제19조(지필고사 시행 관리) ⑥ ----- 정자로 서명 또는 날인 하고 ----- ----- 기록한다. 이후 답안지를 인수한 답안지 매수를 확인한 후 교과 담당교사에게 인계한다.																										
6	<신설>	제28조(학교생활기록부 입력) ①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모든 교과(교)의 모든 학생에 대해 입력하며, 학생들의 교과 특성은 교사가 교과학습 평가 및 수업과정에서 수시·상시로 기록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과의 전 영역을 종합적으로 기술할 수 있도록 한다. 단, 교과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의 경우 그 사유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한다.																										
7	부칙 <신설>	부칙 제2조(본 지침에 없는 사항의 처리)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학업성적관리에 관한 사항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65호)과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라 처리한다.																										

구분	안건명	심의결과	내용	비고
5	지피지기 프로그램 대학생 멘토링·학습코칭 운영	원안 가결	<p style="text-align: center;">지피지기 프로그램 대학생 멘토링·학습코칭 운영</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 style="text-align: center;">1학년 소수 정예 대학생 멘토링</p> <p>1. 운영 (1) 기간 : 3월~12월 (학기 단위로 나누어 운영) (2) 시간 : 주 2회 오후 자율학습 시간(16:00~18:00) 학교에서 진행 * 멘토와 멘티 상호 협의 후 시간 및 요일 조정 가능 등교 주권이 아닌 기간에도 멘토링은 학교 교실에서 진행됨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교실 수업 불가 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 (3) 편성 : 멘토 - 본교 졸업 우수 대학생 선발 멘티 - 과목 및 수준 신정에 따라 팀당 1~4명으로 구성 (4) 비고 - 방과후수업 및 다른 일정과 중복되지 않도록 고려하여 신청할 것</p> <p>2. 내용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중 신청한 과목에 대해 주 2회 2시간씩의 멘토링 진행 학습 내용 지도와 학습 습관 점검 및 학교 생활 조언 병행</p> <p>3. 참가비 - 신청 인원수에 따라 수강료 변동(1팀 4인, 한 달 기준 : 약 100,000원) 대학생 강사 시간당 강사비 30,000원, 수용비 5% 사회통합전형 입학 학생 참가비 무료</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1학년 소수 정예 학습 코칭 프로그램</p> <p>1. 운영 (1) 기간 : 3월~12월 (학기 단위로 나누어 운영) (2) 시간 : 주 1회 오후 자율학습 시간(16:00~18:00) 학교에서 진행 * 교사와 가능한 요일 조정</p> <p>2. 내용 학습 유형에 따른 개인 학습 및 시간 관리, 플래너 작성법 지도 및 관리, 맞춤 입시 유형 대비, 진로에 맞춘 독서 지도</p> <p>3. 참가비 - 신청 인원수에 따라 수강료 변동(1팀 4인, 한 달 기준 : 약 100,000원) 사회통합전형 입학 학생 참가비 무료</p> </div>	

제 목	안 건 명	심 의 결 과	내 용	비 고
-----	-------	---------	-----	-----

2021학년도 1학기 외부학습교재 사용계획

학년	교과명 (방과후학교명)	담당교사	용도		외부학습교재제목		대상인원	예산가격
			정규수업	방과후	교과명(책)	출판사		
1	영어	진*명	1		맞춤형 수능영어 단 기특강 시리즈 수능 문법어법 기본편	능률	253명	10,000원
1	생활과 윤리	심*무	1		수능특강	EBS	260명	6,000원
2	영어	이*영	1		자이스토리 -영어독해완성	수경출판사	230명	17,000원
2	영어 (어법&어휘마스터 편)	이*영		1	수능반민 어법어휘 모의고사 345제	NE능률	15명	14,000원
2	국어영역 독서(이문 학) 파트 특강	안*모		1	ERS온라인포스 친국연합학력평가 기술문제집(독서)	교육방송	10명	13,000원
2	화학1	김*명	1		수능특강	교육방송	2학년	6,600원
2	생명과학 I	박*요		1	개념이지 생명과학 I	수경출판사	방과후수업 신청학생	17,000원
2	지구과학1	김*권	1		EBS 수능특강 지구과학1	교육방송	106명	6,600원
2	물리학1	유*원		1	물리학1 S	이투스	15명	10,000원
3	영어독해와 작문	김*현, 김*수, 진*명	1		EBS 수능특강 영어	EBS	244명	8,400원
3	영어독해와 작문	김*현, 김*수, 진*명	1		EBS 수능특강 영어 독해연습	EBS	244명	8,700원
3	수능영어독해 비연계 수능독해 비연계100%	김*현, 김*수, 진*명		1	결정적 유형 모의고사	이투스	25명	12,000원
3	수능영어 구문학습	김*현, 김*수, 진*명		1	수능영어독해 결정적 구문	이투스	25명	11,000원
3	물리학II	허*환	1		EBS수능특강 물리학 2	EBS	150명	10,000원

6 2021학년도 1학기
외부학습교재
사용계획

원안
가결

제 목	안 건 명	심 의 결 과	내 용	비 고
-----	-------	---------	-----	-----

7	2021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채용공고	원안 가결	<p style="text-align: center;">2021학년도 방과후학교 강사 채용 공고</p> <p style="text-align: right;">경희고등학교</p> <p>1. 모집 내용</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분야</th> <th>프로그램명</th> <th>대상</th> <th>요일</th> <th>시간</th> <th>인원</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방과후</td> <td>오케스트라</td> <td>동아리</td> <td>금요일</td> <td>• 금요일 5-6교시</td> <td>2</td> <td></td> </tr> <tr> <td>방과후</td> <td>로봇반</td> <td>동아리</td> <td>금요일</td> <td>• 금요일 5-6교시</td> <td>1</td> <td></td> </tr> <tr> <td>방과후</td> <td>미술</td> <td>동아리</td> <td>금요일</td> <td>• 금요일 5-6교시</td> <td>1</td> <td></td> </tr> </tbody> </table> <p>2. 모집 세부 사항</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body> <tr> <td>공고 및 접수</td> <td>2021.4.7.(수) ~ 2021.4.12.(월) 24:00</td> <td>e-mail 접수(busiqe@sen.go.kr)</td> </tr> <tr> <td>1차 서류 심사</td> <td>2021.4.13.(화) 16:00</td> <td>제안서 평가 합격자에 한해 유선 또는 SMS로 개별 통지함</td> </tr> <tr> <td>2차 면접 심사</td> <td>2021.4.14.(수) 16:00</td> <td>장소: 본교 세미나실</td> </tr> <tr> <td>결과 통보</td> <td>2021.4.15.(목) 16:00</td> <td>유선 또는 SMS로 개별 통지함</td> </tr> </tbody> </table> <p>3. 계약 내용 및 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기간 : 세부 프로그램 운영자와 협의 1년 계약 ○ 강좌안내 : 강좌 편성 후 학생선택이 있을 시 계약 진행 ○ 보 수 : 본교 수당 기준안 참조[총페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프로그램 및 동대문구청 교육경비보조금 사업은 학운위 심의 사항에 따라 결정 - 특별한 강사비 규정이 없으면 본교 방과후학교 수당기준안에 따릅니다. <p>단, 강사는 학교의 재평가에 의해 재계약 가능(당초 계약기간을 포함하여 총 2년 미만으로만 연장 가능) 재계약 기준은 만족도가 100점 만점의 90점 이상인 강사 중 방과후학교 외부강사추천 심의위원회 평가에서 90점 이상의 강사</p> <p>4. 자격 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 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결과 취업이 제한되지 아니한 자 ○ 의료기관의 채용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적당하다고 판정된 자 ○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기관 및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해당 분야 전문적인 능력을 지닌 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 ○ 초·중등교육법 제22조 제1항에 의거, 교육공무원이 아닌 1년 미만 강사 신분으로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 	분야	프로그램명	대상	요일	시간	인원	비고	방과후	오케스트라	동아리	금요일	• 금요일 5-6교시	2		방과후	로봇반	동아리	금요일	• 금요일 5-6교시	1		방과후	미술	동아리	금요일	• 금요일 5-6교시	1		공고 및 접수	2021.4.7.(수) ~ 2021.4.12.(월) 24:00	e-mail 접수 (busiqe@sen.go.kr)	1차 서류 심사	2021.4.13.(화) 16:00	제안서 평가 합격자에 한해 유선 또는 SMS로 개별 통지함	2차 면접 심사	2021.4.14.(수) 16:00	장소: 본교 세미나실	결과 통보	2021.4.15.(목) 16:00	유선 또는 SMS로 개별 통지함	
분야	프로그램명	대상	요일	시간	인원	비고																																						
방과후	오케스트라	동아리	금요일	• 금요일 5-6교시	2																																							
방과후	로봇반	동아리	금요일	• 금요일 5-6교시	1																																							
방과후	미술	동아리	금요일	• 금요일 5-6교시	1																																							
공고 및 접수	2021.4.7.(수) ~ 2021.4.12.(월) 24:00	e-mail 접수 (busiqe@sen.go.kr)																																										
1차 서류 심사	2021.4.13.(화) 16:00	제안서 평가 합격자에 한해 유선 또는 SMS로 개별 통지함																																										
2차 면접 심사	2021.4.14.(수) 16:00	장소: 본교 세미나실																																										
결과 통보	2021.4.15.(목) 16:00	유선 또는 SMS로 개별 통지함																																										

내 용	비 고
-----	-----

2021학년도 1학기 방과후학교 운영 기본 계획

1. 목표: 2학기 전국연합학력평가(9월, 11월)에서 우수한 성적
2. 일정: 2021.3.29(월) ~ 2021.6.17(금) (1학기 각 과목별 총 14회 수업)
3. 수업시간

수업시간	월	화	수	목
방과후수업 8교시(16:10~17:00)	국어	영어	국어	영어
방과후수업 9교시(17:10~18:00)	수학	교딩	수학	교딩

4. 방과후학교 운영 방향
 - 가. 등교 일정에 따라 등교수업과 온라인 수업(실시간 쌍방향 수업) 병행
 - 나. 7/15(목) 8, 9교시에 모의평가 실시
 - 다. 원진교원의 방과후학교 수업시수는 정규수업 담당시수(실수업시수)의 30% 이내

5. 예상 수강료 (*실제 결제 금액과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음)
 - 가. 국어, 영어, 수학 (차시당 동대문구청지원금 4만원 지원) (단위: 원)

인원수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수강료	199,500	99,750	66,500	49,875	39,900	33,250	28,500	24,938	22,167	19,950
인원수	11명	12명	13명	14명	15명	16명	17명	18명	19명	20명
수강료	18,900	18,025	17,285	16,650	16,100	15,094	14,206	13,417	12,711	12,075
인원수	21명	22명	23명	24명	25명	26명	27명	28명	29명	30명
수강료	11,500	10,977	10,500	10,063	9,660	9,612	9,567	9,525	9,486	9,450

- 나. 코딩 (단위: 원)

인원수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수강료	787,500	393,750	262,500	196,875	157,500	131,250	112,500	98,438	87,500	78,750
인원수	11명	12명	13명	14명	15명	16명	17명	18명	19명	20명
수강료	72,355	67,025	62,515	58,650	55,300	51,844	48,794	46,083	43,658	41,475
인원수	21명	22명	23명	24명	25명	26명	27명	28명	29명	30명
수강료	39,500	37,705	36,065	34,563	33,180	32,227	31,344	30,525	29,762	29,050

6. 2021학년도 1학기 1학년 방과후 학교 개설 강좌 안내

영역	강좌명	담당	내용	교재	수강료 (원)
국어	야! 수능 너도 풀 수 있어 (문학)	지+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제 유형별 접근 방법을 익히고 실제 문제에 대비하여 풀어보며 국어의 전반적인 실력 향상 수능, 모의평가 등 기출문제 풀이론 통해 풀이 방법 	프린트	9,450
영어	영어 기출문제 풀이반	진+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 5개년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의 유형별 기출문제 풀이로 수능 영어에 적응하도록 지도 영어 단어 암기를 습관화하여 영어 학습의 기초를 탄탄하게 지도 	프린트	9,450
수학	모의고사 기출문제 풀이	김+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출문제 풀이를 통한 모의고사 대비 3침, 4침짜리 문제를 과제로 제시 후 다음 차시에 문제풀이를 진행 	수후 공지	9,450
코딩	파이썬 기초	문+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드론 동아리 학생들을 위한 강의 파이썬 드론 코딩을 하기에 앞서 파이썬 기초 강의 	프린트	87,500

8 2021년 1학기 1학년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원안 가결

구분	안건명	심의결과	내용	비고
----	-----	------	----	----

2021학년도 1학기 2학년 방과후학교 운영 기본 계획

1. 일정

- * 4/5(월) ~ 6/18(목)
- * 군별 총 18차시(일별 2시간×9일)
- * 군별 시간표

수업시간	월	화	수	목
방과후학교 1교시(16:10~17:00)	가군	나군	가군	나군
방과후학교 2교시(17:10~18:00)				

2. 수업 방식

- * 기존 방과후학교 방식대로 18차시의 강의식 수업을 진행

3. 강사료

- * 오프라인 수업: 시간당 65,000원(15명~25명)

강사료 증액		강사료 감액	
26명	86,000원	14명	64,000원
27명	67,000원	13명	63,000원
28명	68,000원	12명	62,000원
29명	69,000원	11명	61,000원
30명	70,000원	10명	60,000원

4. 1학기 방과후학교 신청

- * 신청기간: 2021. 03. 26(금) 21:00 - 2021. 03. 28(일) 22:00 (리모스쿨 선택순)

5. 2021학년도 2학년 1학기 방과후학교 강좌 안내

수업	영역	강좌명	담당	내용	비고
가군 월8.9 수8.9	국어	국어영역 독서(비문학) 파트 특강	안충모	- 국어영역 독서(비문학) 파트 문제풀이 접근 방법 강의 및 문제풀이 수업 실시 (오프수강) - 실전 모의고사 풀이 및 학생들의 풀이 방법 에 대한 1대1 피드백 실시(온라인수강)	EBS온라인포스 전국연합학대평가 기출문제집(독서)
	영어	수능 어법 & 이휘 마스터반	이아람	- 수능 민중 어법 습득 및 어휘 암기 훈련 - 수능 어법, 어휘 유형 문제 풀이 연습	수능민중 어법어휘 모의고사 345제
	수학	별도 2023 수학1 실전연습	임성환	- EBSI DANCHOO를 활용한 실전연습 - 실전 감각을 키우기 위한 개념, 사고 정립	별도 유인물
	사회	생활과 윤리 개념 더하기 문제 풀이	심선우	- 생활과 윤리 기출 문항 분석 - 문제를 풀고 온 다음에 해설하는 방식	별도 유인물
	과학	생명과학1	박현모	1학기 생명과학1 교과 시간에 학습하는 주요 주제에 대한 기본 개념을 문제 풀이를 통해 적용 및 활용하는 능력 향상	개념이치생명과학 1
나군 화8.9 목8.9	국어	문학작품 분석과 기술 유형 이해	오만근	- 최근 학력평가 문학 부분 기본 문형의 작품 을 살펴보고 작품 분석 능력을 키움 -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문학, 고전 산문 등 기 출문제의 문형 유형을 분석 국어영역 능력 제고	별도 유인물
	영어	Book Discussion (The Catcher in The Rye)	박정아	- 영어 원서 The Catcher in The Rye(J.D.Salinger)을 읽고 분석하고 토론 - 수업 전 과제로 정해진 분량을 읽고, 자유용 제 토론하며 수업에 참여	책 & 유인물
	수학	수학1에 화-물을 더하다	이소라	- 단원별 기초부터 심화까지 자세한 설명 - 본인의 문제 풀이법을 첨삭 개념 정리노트 완성	자체제작 교재
	수학	수학 논술 풀이하기	정재웅	- 수학 논술에 필요한 논리력, 시술,문제 해결능력 - 다양한 사고를 요구하는 심화 문제를 풀이 하면서 수학 학습 습득 향상	자체제작 교재
	과학	물리학1	유혜원	1학기 물리학1 교과 시간에 학습하는 주요 주 제에 대한 기본 개념을 문제 풀이	531프로젝트 물리학1S

9

2021년 1학기 2학년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원안
가결

제 목	안 건 명	심의 결과	내 용	비 고
-----	-------	-------	-----	-----

10 2021년 1학기 3학년
방과후학교(4월학력평가
대비) 운영계획

원안
가결

2021학년도 3학년 방과후학교(4월 학력평가 대비) 계획

1. 목표: 4월 학력평가 대비

2. 일정: 2021. 03. 29.(월) ~ 2021. 04. 13.(화) (과목별 총 10시간 수업)

3. 프로그램 운영 기간

월(가)	화(나)	수(가)	목(나)	금
3/29 ㉠	3/30 ㉡	3/31 ㉢	4/01 ㉣	4/02
4/05 ㉤	4/06 ㉥	4/07 ㉦	4/08 ㉧	4/09
4/12 ㉨	4/13 ㉩	4/14	4/15	4/16

4. 수업시간

수업시간	월	화	수	목
8교시(16:10~17:00)	가	나	가	나
9교시(17:10~18:00)	가	나	가	나

5. 운영 방향

가. 4월 학력평가 대비 특강

나. 4월 학력평가 기출문제를 기본으로 활용

6. 개설 과목

내용	장소	인원	강사	수강료
국어A	3-4	5	김우정	48,300
확률과 통계 (+수학 I II)	3-7	5	백승훈	48,300
기하 (+수학 I II)	3-8	5	배준	48,300
화학	3-3	5	구분찬	48,300
국어B	3-4	9	김우정	47,840
영어	3-7	9	김동현	47,840
생활과 윤리	3-8	7	심선우	48,000

7. 학력신장프로그램 신청

가. 신청기간: 2021. 03. 24.(수) 18:00 ~ 2021. 03. 25.(목) 23:00 (리로스쿨)

나. 추가 신청 및 과목별 인원 조정 : 2021. 03. 26.(금)

연번	안건명	심의결과	내용	비고
----	-----	------	----	----

11 2021학년도
졸업앨범 제작에
관한 건

원안
가결

합 의 서

1. 계약기간: 2021.03.01. - 2022.02.28. (1년)

2. 계약금액: 금11,395,600원 (금일천일백삼십구만오천육백원)
- 45,950원 * 248부(2021년 3학년 인원 243명, 학교구입 5부)

3. 계약보증금: 금1,139,560원(금일백일십삼만구천오백육십원)

4. 앨범사양

가. 규격 및 지질

구분	내역	비고
크기	신4질(250mm x 315mm), 신4질(250mm x 335mm) 등	
지질	표지(겉면): PU레지(철재코너 등 부착가능) 속표지: 마닐라 합지 2,300 면지: 레자크지(120g) 내지: 칼라유광아트지(180g), 스노우지(180g), 기타 채지	
조판	CTP디지탈 조판	
인쇄/재본	칼라 옵셋 양면 4도 인쇄 / 양장제본, PUR제본, 무선제본 (박음질, 몰딩, 철재 코너 장식 등)	
기타	커버 작업 후 가공	

나. 내용 구성(총 160페이지 이상)

연번	페이지	편집내용 및 구성	비고
1	1	졸업회수, 학교마크, 학교명	
2	2-3	교가, 교가, 교훈, 학교전경	
3	4-9	교장 프로필, 직무모습, 교감 프로필, 직무모습, 교직원 개인사진	
4		담당교사 사진, 반별 학생 사진 (단체, 그룹, 야외, 실내, 학급스케치)	
5		각종 행사 사진 및 특별활동 사진, 편집후기	*페이지 구성은 촬영 컨셉과 내부디자인에 따라 변경 가능

다. 제작 품질: 전년도에 제작한 앨범과 동등한 수준 또는 그 이상의 품질로 제작

5. 계약위반에 대한 조치

가. 업체의 파산 등으로 앨범제작의 어려움이 발생할 시 업체는 신속하게 이를 학교에 통보해야 하며, 제작 중단 발생 시 업체는 앨범제작과 관련한 사전원판 등을 학교에 반환해야 한다.

나. 앨범의 품질에 하자가 발생할 때에는 제작업체에서 100% 책임을 진다. 품질하자의 판단은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상의하며 품질 하자의 판단기준은 '4. 앨범사양'을 기준으로 한다.

※ 관련근거 : 국가재정법 제23조(계속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내역	안건명	심의결과	내용	비고
----	-----	------	----	----

2020학년도 경희고등학교 결산 보고

(2021.02.28 기준)

1. 학급 및 학생수 현황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합계		
	주간	야간	계	주간	야간	계	주간	야간	계	주간	야간	계
학급수	8		8	8		8	8		8	24		24
학생수	230		230	243		243	245		245	718		718 (0)

* 보존자녀는 본수에서 제외하되, 합계란 ()안에 보존자녀 학생수 기재

2. 교원 현황

구분	계 ㉔+㉕+ ㉖	정규교원					기간제교원		시간강사		평균 효율
		교장	교감	보좌 교사	교사	계 ㉔	정원 보충㉕	기타	정원 보충㉖	기타	
정원	50	1	1	9	39	50					
현원	50	1	1	9	27	38	10	6	2		24

3. 사무직원 현황

구분	일반직						합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정원	1		1		3	5	5
현원	1			3	1	5	5

4. 기타직 현황

구분	무기계약근로자(구 학부모피직원)							기간제근로자					합계
	사무행정	시설관리	교육실무사	영양사	조리원	기타	계	교육실무사	영양사	조리원	기타	계	
정원	1		1		4	1	8	2				2	10
현원	1		1		4	1	8	2				2	10

* 사무행정(급여, 수납 등), 시설관리(조부, 방호, 청소 등), 교육실무사(교부, 과학실원, 전산, 사서, 실습 등)

◎ 2020학년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1) 세입	7,476,080,187원
(2) 세출	6,845,990,090원
(3) 차입잔액(이월금)	630,090,097원

◎ 세입

(단위 : 천원)

품목 (과목)	예산액	결산액	증감	비율 (%)	비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49,705	245,885	△3,820	3.6	1. 사업 축소로 인한 구공 지원금 변경
교육비 특별회계 이전수입	869,859	829,483	△40,376	12.4	1. 사업 축소로 인한 교육청 지원금 변경
사립법인 이전수입	570,689	570,689	0	8.2	
기타이전 수입	215,282	210,854	△4,428	3.1	1. 급식일수 감소로 인한 공동조리교 급식비 지원 감소
학부모 무담당수	4,440,024	4,224,360	△215,664	63.6	1. 학생수 감소 및 지원금으로 등록금 감소
행정활동 수입	79,344	52,577	△26,767	1.1	1. 기숙사 보충금 반환
이월금	558,036	606,159	48,123	8.0	1. 명시이월 사업비 증가
소계	6,982,939	6,740,007	△242,932	100	
수익자 부담경비	895,061	736,073	△158,988		1. 등교일수 감소로 인한 방과후학교운영 등 축소
합계	7,878,000	7,476,080	△401,920		

◎ 세출

(단위 : 천원)

품목 (과목)	예산액	결산액	증감	비율 (%)	비고
교직원복수	3,894,809	3,791,884	△102,925	55.7	1. 교직원 전출 및 초과수당 감소
교직원복지 및 역량강화	73,685	70,695	△2,990	1.1	1. 맞춤형 복지사업비 등 감소
학생복지 및 교육격차해소	1,447,256	1,183,047	△264,209	20.7	1. 급식일수 감소로 인한 학교급식 운영 축소
기본적 교육활동	160,239	81,488	△78,751	2.3	1. 등교일수 감소로 인한 교과 활동비 감소
선택적 교육활동	355,690	309,777	△45,913	5.1	1. 등교일수 감소로 인한 방과후학교운영 등 축소
교육활동 지	263,452	217,741	△45,711	3.8	1. 교육활동 예산 과다 편성
학교 일반운영	616,142	306,708	△309,434	8.8	1. 예산 과다 편성 및 등교일수 감소로 인한 각종 유지비용 감소
학교시설 확충	171,666	148,577	△23,089	2.5	1. 학교시설 확충 예산 과다 편성
학교재무활동	0	0	0	0	
소계	6,982,939	6,109,917	△873,022	100	
수익자 부담경비	895,061	736,073	△158,988		1. 등교일수 감소로 인한 방과후학교운영 등 축소
합계	7,878,000	6,845,990	△1,032,010		

12

2020학년도
학교회계 결산(안) 및
교육공무직원
퇴직급여 적립현황

원안
가결

제 목	안 건 명	심 의 결 과	내 용	비 고
-----	-------	---------	-----	-----

12

2020학년도
학교회계 결산(안) 및
교육공무직원
퇴직급여 적립현황

원안
가결

2020학년도 교육공무직원 퇴직급여 적립현황

(단위 : 원)

구분 개인별	기부직적립금 현황	2020학년도 적립현황		2020학년도 퇴직급여 지급액	적립금 이월액	보수지급 형태	비고
		퇴직급여 예산액	적립액				
최○○	20,884,288	22,011,718	1,127,430		22,011,718	월급제	
노○○	7,420,496	8,997,158	1,576,662		8,997,158	월급제	
이○○	0	2,229,686	2,229,686		2,229,686	월급제	
임○○	0	911,199	911,199		911,199	월급제	
소○○	4,445,550	6,938,847	2,493,297		6,938,847	월급제	
배○○	40,000,000	41,842,948	1,842,948		41,842,948	월급제	
최○○	27,000,000	29,000,000	2,000,000		29,000,000	월급제	
이○○	25,000,000	27,363,320	2,363,320		27,363,320	월급제	
한○○	18,000,000	20,000,000	2,000,000		20,000,000	월급제	
한○○	24,000,000	26,000,000	2,000,000		26,000,000	월급제	
계	166,750,334	185,294,876	18,544,542	0	185,294,876		

- 보수지급형태 : 호봉제, 연봉제, 월급제, 일급제, 시급제 등은 기재
-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중 상시근무직원을 포함하여 작성
- 퇴직적립금에 대한 예금 잔액 증명서 첨부하여 제출

연도	안건명	심의결과	내용	비고
----	-----	------	----	----

2020학년도
13 학교발전기금회계
결산(안)

원안
가결

경희고등학교 2020학년도 학교발전기금회계 결산보고서

경희고등학교운영위원회

-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가. 세입액 : 547,290,699원 (①)
 나. 세출액 : 81,650,150원 (②)
 다. 잔액 : 465,640,549원 (③)

※ 2020학년도에 접수된 발전기금 중 「도서 및 물품」, 「수목, 시설 및 재산」은 제외.

2. 세입 결산내역 (금액단위 : 원)

사업명	이월금 및 이자수입	접수액	계
학교체육활동 및 학예활동의 지원	29,326,636	21,755,100	51,081,736
교육용기자재 및 도서구입	0	7,000,000	7,000,000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0	10,000,000	10,000,000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466,404,163	12,804,800	479,208,963
계	495,730,799	51,559,900	① 547,290,699

※ 접수액 : 2020학년도에 접수된 발전기금 중 금전 및 유가증권으로 접수한 금액
 ※ 이월액 : 2019학년도에서 2020학년도 이월한 금액

3. 세출 결산(사업)내역 (금액단위 : 원)

사용용도	세입액	세출내역	잔액
학교체육활동 및 학예활동의 지원	51,081,736	3,952,800	47,128,936
교육용기자재 및 도서구입	7,000,000	6,480,000	520,000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10,000,000	10,000,000	0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479,208,963	61,217,350	417,991,613
계	547,290,699	② 81,650,150	465,640,549

4. 잔액 내역 (금액단위 : 원)

사용용도	내역	금액
학교체육활동 및 학예활동의 지원	축구운동부 운영경비	47,128,936
교육용기자재 및 도서구입	도서구입비	520,000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0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학생 장학금	417,991,613
계		③ 465,640,549

※ 잔액(계) : 2020학년도에서 2021학년도로 이월되는 금액

제 목	안 건 명	심의 결과	내 용	비 고
-----	-------	-------	-----	-----

14

2020학년도 4분기
학교발전기금회계
집행계획 및
집행내역

원안
가결

2020학년도 4분기 학교발전기금회계 집행계획 및 집행내역

경희고등학교

1. 근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4조 제6항

2. 수입 및 지급 현황

가. 기 간 : 2020.12.01. ~ 2021.02.28.

나. 수입액 : 4,092,949원

다. 지급액 : 45,810,950원

라. 종잔액 : 465,640,549원 (전기 계 507,358,550원 포함)

(단위 : 원)

사업명	수입 계획액	지출 계획액	수입액	지급액	4분기 잔액	누계 잔액
학생복지 및 자치활동비	300,000,000	300,000,000	3,956,188	35,378,150	-31,421,962	417,991,613
학교체육활동 및 학예활동비	300,000,000	300,000,000	136,761	3,952,800	-3,816,039	47,128,936
교육용기자재 및 도서구입비	50,000,000	50,000,000	0	6,480,000	-6,480,000	520,000
학교보육시설 보수 및 확충	100,000,000	100,000,000	0	0	0	0
합 계	750,000,000	750,000,000	4,092,949	45,810,950	-41,718,001	465,640,549

3. 수입 및 지급 세부내역

사업명	세부내역	수입액	지급액
학생복지 및 자치활동비	이랜드재단 장학금	3,196,200	6,392,400
	이자수입	259,988	
	종동찬회 장학금		28,485,750
	개인 장학금	500,000	500,000
	계	3,956,188	35,378,150
학교체육활동 및 학예활동비	이자수입	136,761	
	축구부 보급 구입		3,952,800
	계	136,761	3,952,800
교육용기자재 및 도서구입비	도서구입		6,480,000
	계	0	6,480,000

내 용	안 건 명	심 의 결 과	내 용	비 고
--------	-------------	------------------	--------	--------

15

2021학년도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원안
가결

2021학년도 학교폭력전담기구 구성

I 추진 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 8. 2. 개정)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2019. 11. 21. 입법예고)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시행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관련 안내(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42, 2020. 1. 7.) 및 법제처 심사결과 질의(2020.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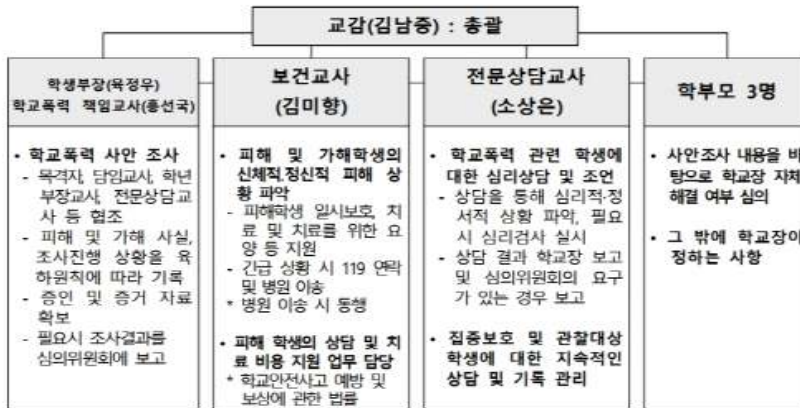
II 전담기구 구성 및 역할

- 학교폭력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 구성
 - 전담기구 심의방법, 전담기구 업무분장, 학부모위원 임기 등 전담기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 전담기구 구성원 : 교감(김남중), 전문상담교사(소상은), 보건교사(김미향), 학생부장(육정우), 학교폭력 책임교사(홍선국), 학부모 3명 총 8명으로 구성된다. (학부모는 전담기구 전체 구성원의 1/3 이상이어야 함.)
- 전담기구를 구성하는 학부모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학교장이 위촉한다.

■ 학부모위원 위촉방법



□ 전담기구 조직



2021학년도 학교폭력 전담기구 위원 명단

연번	직책	이름	비고
1	교 감	김남중	
2	전문상담교사	소상은	
3	보건교사	김미향	
4	학생부장	육정우	
5	담당교사	홍선국	
6	학부모 위원	전선희	
7	학부모 위원	맹정순	
8	학부모 위원	정은경	
총 원		8명	

2021학년도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위와 같이 구성하고자 합니다.

내역	안건명	심의결과	내용	비고
----	-----	------	----	----

2021년 축구부
16 학부모 후원회 규약
변경

원안
가결

- 마. 정기총회 개최 10일전까지 회원들에게 홍보한다.
- 제13조 총회의 실시
1. 정기총회는 매년 2회(09,12월)를 개최하며, 정기총회가 없는 달은 월례회로 대신하고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가. 정기총회
 - 1) 회칙개정
 - 2) 임원선출
 - 3) 예산안 확정 및 결산/감사
 - 나. 월례회
 - 1) 월 회계정산
 - 2) 공지사항 전달 등
 2. 임시총회는 필요한 시안 발생 시 회장단이 소집하거나 정회원 1/30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임시 총회를 요구했을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 제14조 정기총회(월례회 포함) 및 임시총회의 정족수
1. 회원 과반수 총석으로 개회한다.
 2. 의결 결정은 총석회원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하며, 동 수 일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3. 월례회의 정족수는 위임장과 휴대문 문자서비스의 회신으로 위임장을 대신 할 수 있다.
- 제15조 보수(수당)책정
1.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월급여는 기본급 및 각종수당이 포함된 금액이 포함된 금액으로 구성하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2. 급여 및 수당 책정은 운동부후원회 회원 전체 동의를 받고, 2016년 학교운동부지도자 관리규정 및 2016년 학교 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준용하여 총회 승인을 받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고, 학교장의 결재 후 시행한다.(행정실 협의)
 3. 주 근로시간은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초과근무시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4. 급여 및 수당은 매달 25일(주말일 경우 전일) 지급한다.
 5. 급여
 - 가. 전임 코치 : 교육청 전임코치 지원금 급여백사만원(W2,040,000), 후원회 급여백육십육만원(W2,660,000) 합계 월급여 (4,700,000원)
 - 나. 일반 코치 : 월 급여(3,700,000원)
 - 다. 일반 코치 : 월 급여(3,700,000원)
 - 라. 가족사 사장 및 보조트레이너 : 월 급여(2,000,000원)
 - 마. 조 리 원 : 월 급여(2,700,000원)
 - 바. 관리인(버스운전) : 월 급여(2,050,000원)
6. **성과상여금**은 연 2회(4월, 8월)에 학생선수 인권보호, 학습권 보장, 공정한 운동부 운영, 대회 입상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70점 이상일 경우 기본급의 70%를 지급한다. 평가 기준은 아래와 같다.

		학생선수 인권보호									
1	25	24	23	22	21	20	19	18	17	16	15
	0회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이상
* 학교운동부지도자가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한 경우 점수 차감											
2	학습권 보장										
	25	24	23	22	21	20	19	18	17	16	15
	0회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공정한 운동부 운영										이상
3	25	24	23	22	21	20	19	18	17	16	15	
	0회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이상	
* 학교운동부지도자가공정하지 못한 운동부 운영을 한 경우 점수 차감												
4	경기 실적											상위권 10명
	25					20					15	
	전국대회 8강 이상					전국대회 16강 이상						
	원종원전 진출					전국 고등리그 4위 이상						
	서울시 대회 1,2위 입상					서울시 대회 3위 입상						

7. **명절휴가비**(설날, 추석)은 기본연봉월액을 기준으로 전임-일반코치 50%, 관리인은 15%, 조리원 10% 지급한다.
 8. 학교장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학교운동부지도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학교운동부지도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 가능)
 9. 출장비를 지급할 경우, 당해 연도 「서울특별시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른다.
- 제16조 예산운영의 공개
1. 회장 및 총무는 매월 학부모 후원회 회원들에게 집행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연간 집행된 예산을 정기총회(월례회 포함) 또는 임시총회에 결산보고의 의무를 갖는다.
 2. 회의 불참자는 회의 자료 공개 후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회의 자료를 우편으로 송부할 경우 소인이 찍힌 날부터 14일을 계산한다.)